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서울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서울시의 개정된 직제에 맞게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으로 개정(안 제9조 제2항)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2항 및 제66조 제1항의 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 제1항의 결산기한을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개정(안 제22조 제1항)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재대)

가. 제안배경 및 경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한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맞춰 개정하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특징

-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조직개편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안으로서
 - 도시개발공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 중 서울시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으로 개정하여, 앞으로 서울시의 직제와 직명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개발공사 매 사업년도의 결산기한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과 일치토록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여 결산기한을 정비하였음

 세부사항 겸토결과

- 서울시의 개편된 직제에 맞춰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년도 종료후의 결산기한을 관계법에 의거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관한 규정을 종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명」이라고 개정함으로써 향후 직제가 바뀌더라고 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여 운영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지정토록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발우려, 도시개발공사 업무의 특수성, 조례규정상의 명확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사료되므로,
 - 본 조례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규정을 금번 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직제에 맞춰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판별 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관한 규정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3인」을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수정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사업관련 자진이주자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11
------	----

2003. 3.

도시관리위원회

1. 경 과

- 청원자 : 송파구 방이동 199-1 이달원 외 5인
- 소개의원 : 한용용 의원 (건설위원회)
- 접수일자 : 2003. 3. 3
- 회부일자 : 2003. 3. 4
- 상정일자
 -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3. 3. 20) 상정,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청원요지

-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 지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 중 64세 대는 “사업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진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최우선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강동구청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자진 이주하였으나,